

##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5. 제4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6.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7.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